#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1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 : 홍기원 · 정진욱 · 박상혁

민병덕 · 김교흥 · 박정현

박희승 • 복기왕 • 전현희

윤종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 1일에 한하여 유급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는 한차례 실시할 때마다 3~5회 정도 병원 방문이 필요하고, 반복 치료하는 경우도 많음. 이에 연간 3일의 휴가만으로는 치료에 임하기 어려워 일을 그만두는 등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계속되고 있음.

대한민국의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유일한 '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장례인구추계(2022~2072)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전망됨. 또한, 2018년 이후 난임 시술 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심각한 인구절벽위기 상황에서 출생률 반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함.

이에 연간 60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진단에 따라 필요

한 경우 3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보험 지원을 통한 유급휴가로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3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2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을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의2제1항 또는"을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또는"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0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한다.
-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 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 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지원) ①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 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 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 로기준법 լ -----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 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 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18조의2제1항, 제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18조의3제1항 또는----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 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

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 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 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 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 ②·③ (생 략)

제37조(벌칙) ① (생 략)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 2의2. (생 략) <신 설>

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에 연간 60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의사의 진단에 따 <u>라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한</u>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 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 고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 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 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 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제3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2
<u>.</u>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 여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

	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u>한 경우</u>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